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25 선고 2020가단143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 진화

담당변호사 백병익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우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 1) 피고는 2007. 9. 4.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광주시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E(원고의 배우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2) 원고, 피고, C는 2009. 1. 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 중 남아 있는 4억 7,000만 원의 채권을 C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리 양수도 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와 F, G 사이의 가스 충전소 토지 매매계약

- 1) 원고는 2007. 7. 27. 가스 충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H 등 7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30억 원으로 하여 F, G로부터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27. F, G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전소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0. 12. 27. 위 가스 충전소 허가 관련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

다. 충전소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회수

- 1) 원고에 대하여 4억 7,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C와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는 원고와 F, G 사이의 이 사건 충전소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억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협의하였다.
- 2) 원고, 피고, C는 2012. 3. 14.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2. 4. 6. 원고의 F, G에 대한 채권(이 사건 충전소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F, G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채권 중 3억 원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5335).

3) F, G은 2012. 7.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충전소 토지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토지에 대한 가스 충전소 건축허가결정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금은 F, G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F, G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3. 5. 6. F, G이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016, 이하 ‘화해권고결정 금액’이라 한다).

4) 피고는 2013. 7. 2. 화해권고결정 금액 1억 2,500만 원에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1억 1,250만 원을 받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을 충당하고,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의 변제와 C가 원고 대신 지급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과 공증 보수 550만 원 지급으로 C에게 5,5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요청한 I(원고의 조카)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10,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금액 1억 2,500만 원 중 변호사 보수 1,250만 원, 피고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원고의 조카 I에게 지급한 7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5,550만 원이 C에게 지급된 것은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5,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충전소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또는 정산금 5,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부당이득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원고는 피고와 C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와 C가 이 사건 충전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주도하고 법률적 비용을 충당한 점, 화해권고결정 금액 중 일부는 원고가 요청한 원고 조카 I에게 지급된 점,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C는 화해권고결정 금액으로 지급받은 돈을 제하고 대여금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합544364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화해권고결정 금액에서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의 변제와 C가 충당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과 공증 보수 550만 원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거나 피고가 이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예비적 약정금 또는 정산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충전소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육진